

서울特別市永登浦區公務員職務發明 報償條例中改正條例案

의안 번호	123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: 1992. 10. 24.
제안자: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

1. 提案經緯

가. 1992년 10월 23일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 폐회중 개최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김형수의원의 1명이 成案하여 書面動議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 의제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원안 가결

2. 提案理由

가. 현행 조례 제1조(목적)중 특허법 제17조(절차의 추완) 및 제18조(절차의 효력의 승계)는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본조례 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특허법 제39조(직무발명) 및 제40조(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), 즉 직무 발명에 관한 규정으로 법조문이 개정되어야 하며, 동조례 제15조(등록 보상금)는 서울시 조례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창의적인 직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이 인상 개정(92.5.12)되어 이에 상응하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3. 主要情子

- 가. 제1조중 “제17조 및 제18조”를 “제39조 및 제40조”로 함
- 나. 제15조 제1호중 “1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함
- 다. 제15조 제2호중 “5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

로 함

라. 제15조 제3호중 “3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公務員職務發明 報償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
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7조 및 제18조”을 “제39조 및 제40조”로 한다.

제15조 제1호중 “1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하고

동조 제2호중 “5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하며

동조 제3호중 “3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안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	제1조(목적) 및 제40조	제15조 (등록보상금)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	제15조 (등록보상금)	1. 특허권. 10만원 2. 실용신안권. 5만원 3. 의장권. 3만원	제39조 1. 100만원 2. 50만원 3. 30만원